



18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민찬기
서 기 김종원

1. 조직

- 위 원 장 : 민찬기 • 서 기 : 김종원
- 회 계 : 조길연 • 위 원 : 김은경 김유식

2. 회의

1) 제1차 회의

- ☞ 일 시 : 2020. 10. 28(수) 12: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다.
 - 위원장: 민찬기 목사 • 서 기: 김종원 목사
 - 회 계: 조길연 장로 • 위 원: 김은경 목사, 김유식 목사
 - ②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과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다.
 - ③ 차기회의는 11월 25일(수) 11시에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 일 시 : 2020. 11. 25(수)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은급재단의 상황보고 및 연금 상품 설명을 실무국장으로부터 듣다.

3) 제3차 회의

- ☞ 일 시 : 2021. 3. 4(목) 11:00
- ☞ 장 소 :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연/기금 참여(가입) 유도를 위하여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기로 가결하다.
 - ② 연/기금 수입구조 창출을 위하여 관계 기관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 ③ 지방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가결하다.(4개권역 : 수도권, 중부, 영남, 호남)

4) 제4차 회의

- ☞ 일 시 : 2021. 5. 28(금) 11:00
- ☞ 장 소 : 예수인교회
- ☞ 결의사항
 - ① 연금가입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은퇴 목회자에 대한 총회의 제도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현재 총회 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다.

② 은급 연 / 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차기 회의 시 제106회 총회 청원사항을 결의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21. 8. 2(월) 09:00

☞ 장 소 : 총회회의실(화상회의)

☞ 결의사항

① 제106회기 총회 보고서 및 청원사항을 채택하기로 결의하다.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최종보고

1.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

1) 은급연금 의무 가입 건

- 총회 소속 모든 목사가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은퇴 시 교회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 목회자들이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고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목회 은퇴 후 노후 대책이 준비 되지 않아 정년이 되어 은퇴를 피하기 위해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급증하므로 은급대책을 마련하여 노후 걱정하지 않고 목회하도록 하며, 정년 후 교단 이탈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2) 은급기금 의무 가입(납입) 건

- 은급기금은 각 교회 세례교인 의무금 1/10로 하고 매월 납입한다.

2. 수임 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1) 본 교단 연금 제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노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 복지성 제도

2) 연금 제도의 필요성

핵가족 시대 환경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 하기위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다. 특히 목회자로 일평생을 살아온 목사는 일반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소속된 교단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제도이다.

3) 본 교단과 타교단의 연금 제도 차이점

타교단과 연금이란 제도는 동일하나 타 교단은 목회자 연금의 의무가입을 기본원칙으로 높은 가입율을 통해 연금 재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단 내 전체 목회자들이 연금제도 및 기금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은퇴 후 노후 준비에 앞서가고 있다.



청원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총회 소속 모든 목사가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은퇴 시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단 소속 목회자의 의무 가입
2. 강도사가 목사 안수 시 연금가입 의무 (제102회 총회 결의를 규칙으로 명시 필요)
3. 재정 확보
 - 1) 교단 소속 전교회 기금 납부 (제76회, 제77회, 제82회 총회 결의를 준수할 수 있는 법적 제도 필요)
 - 2) 지 교회 세례 교인 현금 중 10% 기금으로 의무 지원
4. 교단 지도자 의무 가입을 통하여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선거법 개정)
5. 노회별 미래자립 교회 지원 시 목회자 연금 납입액 지원 (노회 규칙 삽입)
6. 노회 이명시 연 / 기금 가입 증서 제출 의무
7. 총회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를 포함하여 ① 총회 총대(목사)는 은급기금 / 연금 가입증명서를 ② 총대(장로)는 기금가입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삽입)
8. 연금/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연금가입연구위원회의 106회기 연장을 청원합니다.

2021년 9월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위원장 민찬기
서 기 김종원